

감 사 보 고 서

부패신고사건 [갑질 · 인권 침해 행위] 조사

2026.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신고 및 조사대상 개요	3
III. 감사결과	6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감사실은 국민신문고 및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기 된 직원 비위 의혹에 대해 자체 검토함('26.1.14)
- 신고자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조사가 필요하며, 사실확인으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바로잡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감사 중점사항

- 000★★극장 직원 직무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
 - 극장 사용자인 대관단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고압적 태도 등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2명) : A A A 과장, V V V 과장
- 감사기간
 - '26.01.19.(월) ~ 01.30.(금) : 예비조사
 - '26.02.02.(월) ~ 02.06.(금) : 실지감사 / 5일간
 - '26.02.09.(월) ~ 03.23.(월) :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요구서 발송

4.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 : ○○○○팀

감사범위 : 000★★극장 근무 직원 직무 수행 전반('25.4월~)

5.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최종 확정

○ '26. 3. 20.(금)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수렴

○ '26. 3. 23.(월) 감사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점검결과 최종 확정

II. 신고 및 조사대상 개요

1. 신고개요

□ 신고요지

- 신고일시 : ' 26. 1. 12. (레드휘슬)
- 신고유형 : 갑질 · 인권 침해 행위
- 제 목 : 000★★극장 무대감독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 주요내용
 - ' 26. 1월 초, 000★★극장에서 ‘000000사업회’ 주관으로 진행 된 <0000 000 0000>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및 공연 진행 과정 중 무대감독(●●● 차장)의 비협조적 태도, 거짓 설명, 강압적 요구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행사팀 전체가 무시당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음
- 요구사항
 -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및 해당자에게 강력한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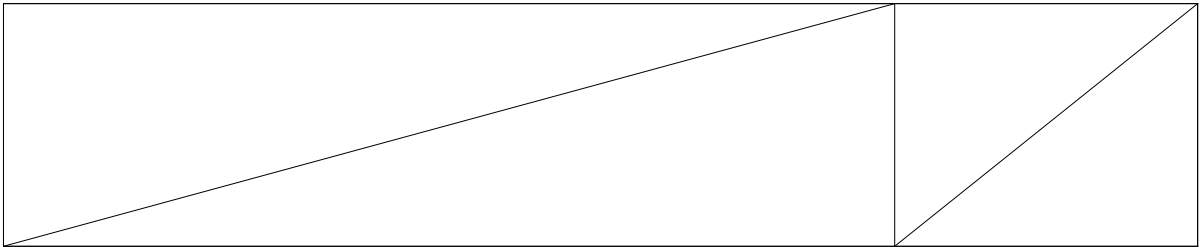
2. 조사대상

□ 피신고자 : 0000팀 차장 ●●● (000★★극장 무대감독)

- 피신고자는 ' 11.9.1. 무대예술전문인 직종으로 입사하여 ' 25.4.1.부터 현재까지 0000팀 소속으로 000★★극장 무대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000★★극장

- 사업목적 : 대학로 소극장 문화의 상징 ♡♡소극장을 어린이 중심 000★★극장으로 운영
- 사업내용 : 노후화 된 소극장을 공공극장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양질의 어린이 공연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발표 기회 제공
- 주요연혁
 - ' 24. 7월 000★★극장 개관
 - ' 25. 4월 운영주체 변경 (위탁운영 → 예술위 직영)
- 시설 현황 :



□ 2026 ■■■■ ■■■■ ■■■■

- 추진배경
 - <■■■■ ■■■■ ■■■■> 는 ♥♥♥ 前 ♡♡ 대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 예술위 ')의 사회적으로 공표된 약속¹⁾에 기반, 000★★극장(이하 ' ★★극장 ')에서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현재는 ♡♡ 기술팀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회' 에서 행사를 위한 별도의 팀(이하 ' 행사팀 ')을 꾸려 무료대관 형식²⁾으로 추진 됨

1) ♡♡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소식 이후, ♥♥♥ 전 대표는 ◇◇◇ 위원장을 통해 “뿌린 씨앗은 내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에서 매년 해왔던 ■■■■ 콘서트 같은 경우는 ■■■■ 기념재단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계속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내년 1월 ■■■■ ■■■■ ■■■■ 콘서트 정상 개최를 예고했다. (◇◇◇ 위원장 “옛 ♡♡ 뜻 000★★극장서 이을 것...”, @@@(24.7.17))

2) 000★★극장 운영주체 : ' 25년 ■■■■(위탁운영), ' 26년 예술위 ■■■■극장

○ 행사개요

- 일시 : ' 26. 1. 4. (공연) / 26. 1. 6. (경연)
- 장소 : ★★극장
- 주최·주관 : [주최·주관]사업회

3. 관계법령

- 「윤리지침」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직무복부규정」 제4조 (의무수행)
-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Ⅲ. 감사결과

1. 조사결과 및 총평

[신고사실 및 판단기준]

- 신고의 내용은 '26. 1월 초, '○○○○○○○○사업회' 주최·주관으로 ★★극장에서 진행 된 <○○○○ ○○○ ○○○> 행사와 관련하여, 피신고자의 비협조적 태도, 거짓 설명, 강압적 요구 등으로 인해 대관 및 공연 진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행사팀 전체가 무시당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주장임
- 이에 감사실은 신고인, 행사팀 관계자 및 피신고인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현장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언적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기록영상 확보와 소관부서로부터 업무관련 생성 문서를 제출받는 등 기록상의 증거를 분석하여 업무처리의 불합리함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 함
- 예술위 직원은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에 근거하여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복무규정」 제4조(의무수행)을 준수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공헌하여야 할 의무를 명심하여 친절·공평무사하게 봉사하고 예술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동강령」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면 안 됨

[쟁점사항 및 판단]

□ 이 건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음

① 피신고자의 「윤리지침」 제6조, 「직무복무규정」 제4조 위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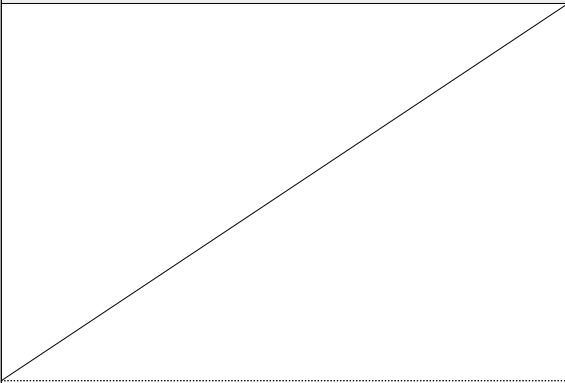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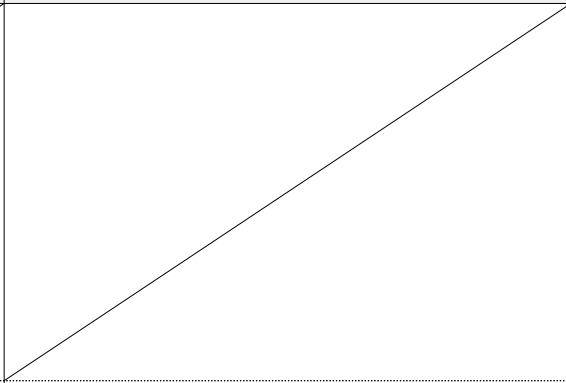
- 피신고자의 불량한 직무태도로 인하여 행사팀이 대관 및 공연 진행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임
- 그러나 신고자가 지목한 피신고자의 반복적인 거짓 설명, 원칙 없는 거짓 주장 등은 행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신고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개별적인 경험과 판단에 따라 행사팀 관계자 사이에서도 엇갈림
- 이를 고려하면, 피신고자의 불량한 직무태도 등 개인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은 부족함

②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제14조 위반여부

- 피신고자의 행사팀에 대한 무대막 설치작업 요구는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담을 행사팀에 전가한 행위라는 주장임
- 이와 관련, ★★극장이 행사팀에게 제공한 <기획회의록>, <무대 안전수칙> 등을 살펴보면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이에 피신고자는 안내한 바대로 행사팀에게 철수 시 무대막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피신고자와 행사팀이 이해하는 원상복구의 기준과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됨

- 피신고자는 ★★극장을 이용하는 대관단체에 제공되는 자료 중 하나인 <무대기술정보안내>에 수록되어있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무대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의 상태로 안내한 반면, 행사팀은 사전답사 및 무대 설치시 현장에서 확인했던 무대막이 없는 조건을 원상복구의 상태로 인지하였음

<★★극장> 무대사진

'무대기술정보안내' 수록 이미지	행사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무대환경
	
(무대막 o)	(무대막 x)

-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은 ★★극장 설치·철수 시 연속되는 대관단체 간에 행해지는 속칭 '쇼핑' 행위로 파악 됨
-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무대, 조명, 음향장비 등을 대관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면 대관단체는 이를 설치·제거하여 무대를 구성하고 철수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데, 연속되는 대관단체의 무대구성에 따라 동일한 여건이 확인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과정을 생략하고 인수인계하는 것을 대관단체 사이에서 속칭 '쇼핑' 이라고 일컬음
- 이러한 방식은 예술위가 운영하는 극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당시 대관일정이 매우 촘촘했음이 고려되어 대관단체의 무대구성 시간축소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극장은 허가하였으며, 종종 대관단체 간에 직접 협의 후 통보했던 사례도 확인 됨

- 따라서 무대막을 사용하지 않은 행사팀의 경우, 앞선 대관단체가 무대막이 없는 무대구성이어서 동일한 조건을 양도받았으나 후속 대관단체의 무대구성에는 무대막 사용계획이 있었으므로 원상복구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사팀은 사용한 적 없는 무대막 설치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임
- 피신고자 및 ★★극장 실무자들이 현장답사, 스태프회의 등을 통해 원상복구의 기준과 상태를 행사팀에 구두로 설명·안내 하였던 것은 확인되나, 이와같이 ‘쇼핑’ 행위가 진행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행사팀이 제공받은 자료와 구두 설명·안내만으로 ★★극장이 제시하는 원상복구의 기준과 상태를 인지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행정양식이 미비하였던 ★★극장의 사정으로 협의사항에 대한 행사팀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안내 과정에서 생략되었는데, 이것이 오해를 발생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함
- 한편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고압적인 태도로 행사팀에게 무대막 설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무대막 설치작업을 했던 행사팀의 무대감독은 피신고자가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익숙하지 않은 작업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피신고자 등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진술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무대막 설치 등 원상복구와 관련한 ★★극장의 정보전달이 행사팀에게 충분하지 않아 부당함을 제기하게 된 정황은 확인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는 있으나, 행사팀에 대한 피신고자의 업무요청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신고자가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담을 행사팀에게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및 조치사항]

- 이 건과 관련, 피신고자의 「윤리지침」, 「직무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위반사실은 없음
-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극장의 행정시스템과 안내 절차 등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대관단체와의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 업무방식의 정비를 요구함
- 또한, 예술위의 극장시설인 000·000 000극장의 운영현황과 비교했을 때 ★★극장에 배치 된 전문인력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하며, ★★극장 0000팀의 실제 업무 범위가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는 현상들이 확인되었음
- 이에 자체점검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운영인력 확충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총건수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1	-	-	-	-	-	-	-	-	-	-	-	1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부서
1	000★★극장 무대 운영·관리 비합리	통보	000★★극장 무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안내 관행을 정비하고, 마련한 업무준칙 및 행정양식을 토대로 행정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여 업무의 신뢰를 제고하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	0000팀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000★★극장 무대 운영·관리 비합리

소 관 부 서 0000팀

조 치 부 서 0000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대학로 소극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학로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었으나 폐관을 앞두고 있던 舊♡♡ 공간을 000★★극장(이하 '★★극장')으로 '24.7월 재개관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공연 및 공연단체에 대한 양질의 대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5.4월부터 ■■극장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극장의 0000팀은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극장 무대시설 운영 및 관리, 무대기술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데, 자체규정이 불비하여 기존 운영시설인 000·ㄷㄷㄷ ■■극장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연장 운영규정」,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참조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극장 무대 운영·관리에 적합한 업무준칙 및 행정양식의 부재

○○○○팀은 「공연장 운영규정」,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관 시작일 14일 이전에 대관단체와 스태프회의를 진행하고 무대, 조명, 음향 등의 무대 기술 사항을 협의·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팀에서 사용하는 소정의 ‘스태프회의록’ 양식을 활용하여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극장의 경우 기존의 양식으로는 내용을 정리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대관단체가 제출하는 공연계획서 등 임의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록을 같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극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업무준칙 및 행정양식이 부재하여 사안에 따라 실무자들의 재량으로 임의의 절차나 방식을 마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관리의 객관성,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대관단체와 다툼이 야기 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내·외부의 신뢰를 저하하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무대안전수칙> 등 원상복구 기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팀은 대관단체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되는 <무대안전수칙> 등을 근거로 공연 종료 후 대관단체에게 무대시설을 원상복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극장 운영 사정을 살펴보면 대관단체가 복구해야 할 ‘원상’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특히, 현재 ★★극장은 무대설치 및 철수과정에서 연속되는 대관단체 간에 속칭 ‘쇼핑’ 행위가 행해진다.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무대, 조명, 음향장비

등을 대관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면 대관단체는 이를 설치·제거하여 무대를 구성하고 철수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연속되는 대관단체의 무대구성에 따라 동일한 여건이 확인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과정을 생략하고 인수인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관단체 별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무대조건이 달라지므로 ★★극장과 대관단체 간에 ‘원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팀은 대관단체와 진행하는 현장답사, 스태프회의 등을 통해 ‘원상’을 여러차례 구두로 설명·안내하고는 있으나, 대관단체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업무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관단체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등 현재의 방식은 대관단체가 ○○○○팀이 제시하는 ‘원상’을 충분히 인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다. 전문인력 배치 부족

○○○○팀은 예술위 극장시설의 무대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무대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분야를 무대(기계), 조명, 음향으로 구분하고, 극장시설마다 전문인력이 분야별로 약 2배수가 배치되어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관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특정 전문인력의 근무편성 조정이 용이하며 전문인력은 대관단체의 창작활동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극장은 재개관 당시 예산 부족으로 다른 극장시설과 같은 수준의 2배수 전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표]와 같이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1명씩만 배치되었고 관리자로서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부여하는 등, ★★극장의 전문인력은 순환근무 및 대관단체와의 협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예술위의 다른 극장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무대기술을 기대하는 대관단체로부터 ★★극장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팀 전문인력 배치 현황('25.12월 기준)

구분	○○○·zzzz ■■극장			★★극장		
극장 수(A)	4개 (대극장 2개, 소극장 2개)			1개 (소극장 1개)		
전문분야	무대(기계 ¹⁾)	조명	음향	무대	조명	음향
배치인력(B)	10명	7명	7명	1명	1명	1명
비율(B/A)	2.5	1.75	1.75	1	1	1

관계부서 의견

○○○○팀은 감사지적에 전반적으로 수궁하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미비했던 ★★극장 무대 운영·관리 업무준칙 및 행정양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태프회의 등을 진행함에 있어 회의록 공유, 합의 내용 상호 확인 등으로 대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팀장은 ★★극장 무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안내 관행을 정비하시고 마련한 업무준칙 및 행정양식을 토대로 행정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여 업무의 신뢰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대극장의 경우 업무가 무대감독·무대기계로 세분화 됨